

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

(의안번호 제913호)

심사 보고서

(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	2005. 5. 17	고	성	군	수
나. 회 부 일 자 :	2005. 7. 20				
다. 상 정 일 자 :	2005. 7. 20	예산결산특별위원회	상	정	
라. 의 결 일 자 :	2005. 7. 20	예산결산특별위원회	원안가결		

2. 주 문

-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

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함.

4. 주요골자

- 별첨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·세출예산편성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.0%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,

-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, 업무추진비,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.
-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8억 4,148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6.8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면 「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용역」, 「경남 239호 어업지도선 긴급수리 및 감속기 교체」에 72,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0,900천원을 지출하고 1,100천원을 불용하였음.
-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비비로 집행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, 과다한 예비비 예산 편성으로 예산운용의 적절성과 효율성, 지출된 내용에 대하여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 단위사업별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7. 1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

3. 주요골자

□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예산과목			지출결정		지출원인행위		지 출 액		이월액 (라)	불용액 (가-다- 라)	지출사유
	세항	세세항	목	일자	금액(가)	일자	금액(나)	일자	금액(다)			
계					72,000		70,900		70,900	0	0	1,100
상산면 폐광산 주민건강영향 조사용역	3212	210	207-01	2004. 7.21	50,000	2004. 7.21	50,000	2005. 1. 5	50,000		0	2004. 6. 3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, 폐광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영향 평가와 중금속의 노출경로 및 식품의 안전성 파악을 위한 환경부 주관 상산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
경남 239호 어업지도선 긴급수리 및 감속기 교체	3153	220	401-01	2004. 10.26	22,000	2004. 11.04	20,900	2004. 11.19	20,900		1,100	2004.10.5일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(재해)로 파손된 경남 239호 어업 지도선 긴급수리 및 감속기 교체비